

모빌리티인문 정책제안 23-2(통권 8호)

디지털 성폭력의 역동적 특성과 피해자 지원의 지향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KU Academy of Mobility Humanities

Contents 목차

I. 제안 배경	1
1. 모빌리티의 고도화와 범죄피해	1
2. 디지털 성폭력 범죄피해의 특성과 현황	1
II.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 정책의 추이	6
1.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근거 법률	6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정책	9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현황과 함의	11
IV. 현행 피해자 지원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제안에 갈음하여	13
1. 법률적 조력 측면	13
2. 피해자 지원 기구의 운영과 권한 측면	16
● 참고문헌	19



디지털 성폭력의 역동적 특성과 피해자 지원의 지향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디지털 성폭력 사건들은 모빌리티 기술이 악용되었을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은 대면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와는 달리 하나의 유포 행위로 영구적 전파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편집, 가공 등의 행위가 개입하여 또 다른 피해를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주저하게 하고 트라우마를 겪게 하며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향방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질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의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피해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특성상 일반 범죄 피해자보다 다양한 측면의 지원과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와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진술권을 포함한 조력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상대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조 단체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중 대부분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삭제 권한이 없고 타 기관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핵심적 지원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력의 확충과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는 현재 타 기관에 대하여 삭제나 차단 요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피해의 조속한 차단을 위해서 직접 삭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Keywords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변호사, 삭제지원

⟨Abstract⟩

The Dynamic Nature of Digital Sexual Violence and the Orientations of Victim Support

Recent high-profile cases of digital sexual assault have highlighted the harm that mobility technology can cause when misused. Unlike face-to-face sexual offences, digital sexual violence exhibits a dynamic nature where a single act of dissemination has the potential to be perpetuated permanently and can be edited, manipulated, and otherwise used to create further harm. These characteristics engender victims' hesitancy to report, traumatise them, and induce social isolation. Therefore, considering these distinctive features, the formulation of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needs to be determined. The Constitution recognises the entitlement to state assistance and the right to advance opinions in trial proceedings as fundamental rights of victims, a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in particular, are guaranteed various aspects of support and protection than victims of other crimes due to the distinct nature of offence and harm. Critical among these supports are the victim's right to a government-appointed lawyer and support for removing non-consensually distributed images and videos, crucial institutions that mitigate and facilitate recovery from harm. However, the scope of assistance, encompassing the right to advance opinions, granted to attorney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is circumscribed,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to impeach the defendant's claims is not guaranteed, impeding the active representation of the victim's perspective. Additionally, despite the Advocacy Centre for Online Sexual Abuse Victims (A.C.O.S.A.V.), a prominent digital sexual crime victim rescue organisation, primarily offering support for the removal of non-consensually distributed images and videos, the most pivotal support is not efficiently provided because only the limited human resources requests external entities to delete or block images and videos.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this proposal advocates for measures aimed at augmenting the efficacy of critical support systems for victims of (digital) sexual violence. Firstly, to enhance the legal representation for sexual crime victims, there is an imperative to broaden the statement rights afforded to the victim's attorney. Secondly, for the fortification of the A.C.O.S.A.V. – the entity facilitating comprehensive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of digital sexual violence – an augmentation in personnel and the transition to a regular employment framework are requisite. Moreover, incorporating technological solutions that can autonomously identify and obstruct the dissemination of non-consensually distributed images and videos is deemed essential. Lastly, to expedite harm preven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A.C.O.S.A.V. be endowed with direct deletion authority, circumventing the current practice of indirectly supporting deletion requests through external institutions.

Keywords

digital sexual crimes, victim of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rights, attorney for victim, image deletion service

I. 제안 배경

1. 모빌리티의 고도화와 범죄피해

과거에는 사람, 사물, 정보 등의 이동이 물리적 거리, 국경, 교통 인프라 등에 좌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이러한 이동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정도로 매우 고도화되었음. 특히 최근 몇 년간의 팬데믹 상황은 온라인을 이용한 생활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증가시켰음.

오프라인에서의 생활 영역이 온라인으로 이동·혼합·확장됨에 따라 작게는 생활의 편리에서부터 크게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시민의 정치 참여 배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고도의 전파성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역기능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였음.

특히, 여타의 범죄와는 달리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피해라는 점에서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방안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비례하여 적극적으로 논해질 필요가 있음.

2. 디지털 성폭력 범죄피해의 특성과 현황

1)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

카메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에 대하여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그중에서 “디지털”은 여러 자료를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서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 상태나 사이버 공간 안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은 물론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개념임. 본 제안서는 “디지털 기

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디지털 성폭력”으로 폭넓게 이해하고(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중에서 실정법을 통해 범죄화된 성폭력을 “디지털 성폭력 범죄”라고 정의함.

2) 디지털 성폭력 범죄피해의 특성

대부분 1회성으로 끝나거나 매 행위시마다 하나의 범죄로 산정되는 대면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와는 달리, 디지털 성폭력은 하나의 유포 행위로 영구적 전파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등을 편집, 가공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창출할 수 있음. 성폭력이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 범죄의 재생산, 연쇄적 피해, 국경을 넘나드는 전파성 등 역동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꺼리게 하여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하고 피해의 종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심한 좌절과 트라우마를 겪게 함. 또한 이 촬영물 등을 주위 사람들이 시청했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생활을 포기함으로써 경제적 곤란을 겪기도 함.

이와 같은 범죄들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① 변형 카메라를 매개로 불법영상을 촬영하던 수준에서 협박과 공갈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을 하도록 하거나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② 기존에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방식에서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거나 폐쇄적인 SNS를 활용하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나타내며, ③ 개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유포가 주를 이루던 유형에서 제작, 자금전달, 운영 등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유료회원에게서 암호화폐 등을 받는 등 대규모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냄.

이처럼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다양화·조직화된 양상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성폭력 피해의 규모와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동의 촬영 - 유포로 이어지는 형태의 범죄와는 달리, 대상을 특정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강요를 통해 지속적 성착취를 하는 형태의 범죄는 매우 심각한 피해와 비가역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함.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전의 속도와 수준과 비례하여 복잡·다변화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향방은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여 정해질 필요가 있음.

3)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현황

이른바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의 여파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거 처벌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행위, 예를 들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폐하는 행위,¹ 딥페이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엄벌주의 기조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오히려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검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전체 범죄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전체 범죄 건수는 2016년 2,008,290건에서 2021년 1,531,705건으로 약 24% 감소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같은 기간 29,357건에서 32,898건으로 증가하였음.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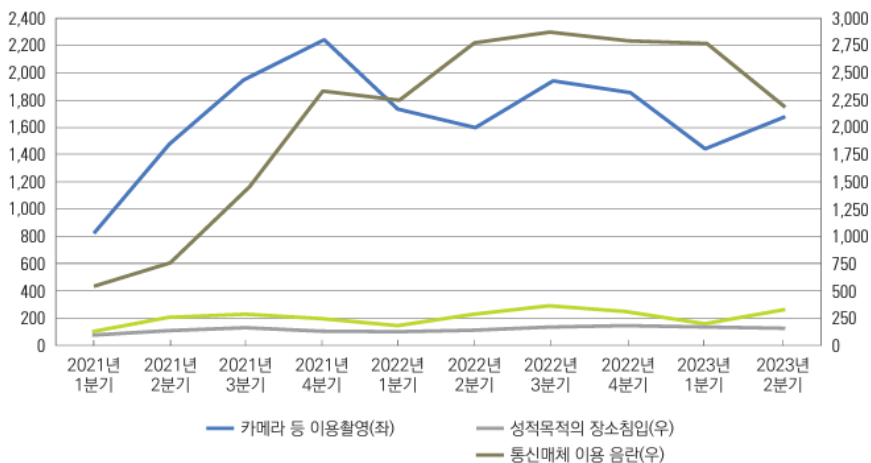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간 등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허위영상을 편집·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등	계
2012	4,349 (18.6)	10,949 (46.8)	1,937 (8.3)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3.9)	1,332 (5.7)	-	-	23,376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1)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	-	29,097
2014	5,092 (17.1)	12,849 (43.0)	622 (2.1)	8 (0.0)	872 (2.9)	123 (0.4)	6,735 (22.6)	470 (1.6)	1,254 (4.2)	1,838 (6.2)	-	-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	-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	-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	-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	-	32,104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	-	32,029
2020	5,825 (19.3)	14,486 (48.1)	102 (0.3)	9 (0.0)	574 (1.9)	274 (0.9)	5,005 (16.6)	697 (2.3)	2,070 (6.9)	906 (3.0)	32 (0.1)	125 (0.4)	30,105
2021	5,737 (17.4)	13,156 (40.0)	74 (0.2)	4 (0.0)	558 (1.7)	315 (1.0)	5,686 (17.3)	548 (1.7)	5,079 (15.4)	923 (2.8)	260 (0.8)	558 (1.7)	32,898

〈표 - 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2~2021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

1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2020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17264호)되기 이전에는 제3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한하여 그 유폐 행위를 처벌하였기 때문에 협박이나 공갈, 사기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몸을 촬영한 경우에는 이후에 제3자가 이를 유폐하더라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²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³ 즉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의 비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21.7%, 24.1%, 23.3%, 22.9%, 24%, 35.2%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 대비 2021년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의 영향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과 검거의 결과가 반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아래 그림과 같이 주요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023년 3분기 현재까지 2021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 1〉 성폭력범죄 유형별 분기별 발생건수 (2021년~2023년 2분기)

(출처: 대검찰청 범죄동향리포트)

이러한 현상은 그간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새롭게 심화된 방안을 고민할 필요를 시사함.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 수사, 처벌 강화 등의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방안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의 확산, 인권과 평등 의식 제고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차원의 정책이 더욱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발생의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방안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현재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0. 3. 24. 개정(법률 제17086호, 2020. 6. 25. 시행)을 통하여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제14조의2)하였다. 따라서 위 통계에 나타난 자료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25일 이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역시 2020. 5. 19. 개정(법률 제17264호, 2020. 11. 20.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지원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됨.

II.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 정책의 추이

1.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근거 법률

1) 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권리

최고 규범인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으로서 피해자 역시 이러한 기본권의 향유 주체임. 헌법은 피해자의 일반적 권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천명한 헌법 제10조를 통해서 그 이념적 기초를 도출할 수 있음. 또한 헌법은 아래 표와 같이 재판절차 진술권과 범죄구조청구권을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해 두었음. 그러나 헌법상 피해자의 기본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헌법 자체 보다는 하위법률을 통한 실질적 보장 절차를 필요로 함.⁴ 아래의 표는 헌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 및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그 권리가 구체화 된 내용임.

헌법 제1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헌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표 - 2〉 피해자의 일반적 권리에 관한 조항

4 소병도, 〈범죄피해자의 헌법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통한 보장〉, 《홍익법학》 17(2), 2016, 309쪽.

2)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관련 권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 관련한 권리 외에 성폭력, 그리고 특히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형사절차상의 특례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

■ 형사절차상의 특례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⁵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술녹화 영상물 등 증거에 대해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비밀보호와 신변안전을 위한 권리

성폭력 피해자는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위해 진술조서 등에 가명을 사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측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 범죄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호와 지원이 요청되지만 그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국선변호사제도를 들 수 있음. 구「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을 통해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었던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전체 성폭력 범죄 사건으로 전면 확대되어 시행중에 있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⁶ 또한 자력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국선

5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뒤이어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431호)은 제정 당시부터 아동학대범죄사건에 피해자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인정되고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국선변호사⁷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또는 검사가 선임한 국선변호사는 다른 범죄 피해 변호사와는 달리 형사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권 및 진술권이 인정됨.

형사절차상의 조력		형사절차 외의 조력
수사단계	공판단계	
• 피해자 수사절차 참여 관련 설명 및 변호사·신탁관계인·진술조력인 등 피해자 지원 안내 • 피의자 조사과정의 참여 • 피해자 조사과정 및 조사 후 의견개진 • 구속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 피해자 상담을 기초로 범죄사실, 증거관계 등을 의견서로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 •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 등에 대비한 보호 조치	•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 • 공판기일 출석 • 양형 증거 및 탄핵 증거 수집 • 의견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관련 소송 등 법률지원 •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표 - 3〉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한과 조력 내용

(출처: 정도희(2022), 임보미(2015))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⁸

■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앞에서 언급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실질적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권리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국가적 지원은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

7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 칭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국선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한다.

8 성현정,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과 과제〉, 《피해자학연구》 31(2), 2023, 268쪽.

와 재유포의 방지라고 할 수 있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등장한 영상물 유포와 주변 사람들의 시청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간과 유사한 정도의 심리적 충격을 받으며,⁹ 실제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중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2018년 3월 13일 개정(법률 제15451호)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 및 편집물 등,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제7조의3 제1항). 이때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죄를 범한 성폭력 및 성범죄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일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동조 제4항, 제5항).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정책

국가 차원에서 최초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책 구상은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정부는 이 종합대책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시도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제시함.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2018년 4월 30일 개소하였음.

뒤이어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차단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 측면의 대응을 추진함.

9 김태경,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와 접촉성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 비교〉, 《상담심리교육복지》 8(6), 2021, 36쪽.

여성가족부는 2020년 2월 20일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확대·강화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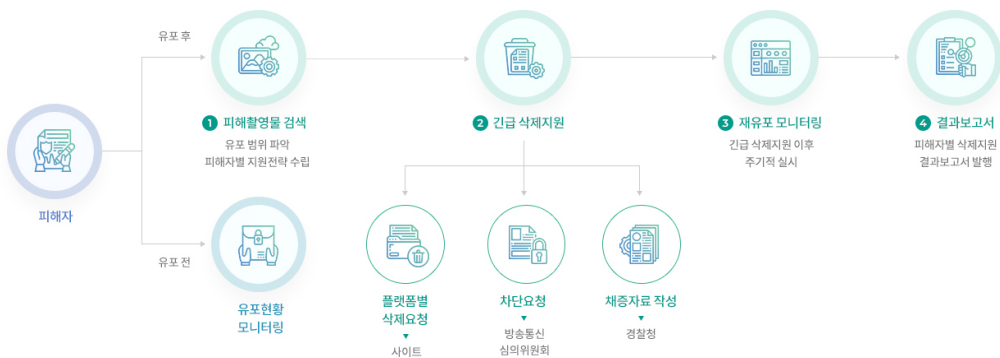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확대
 - 삭제지원 요청범위 및 피해지원 대상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특화된 상담, 치료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적용 추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성능개선 등 고도화
 -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수사조직 및 소위원회 확대 및 신설
 - 선제적·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디지털성범죄의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한 국내·외 공조 기반 구축
 - 사이버성폭력 수사 시 피해자 지원제도 적극 안내
-

<표 - 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내용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 성착취와 성착취물의 유료 배포 등으로 기업화·조직화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함. 이 중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는 피해영상물을 신속 삭제하는 방안으로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 간소화(선삭제 후심의), ③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자동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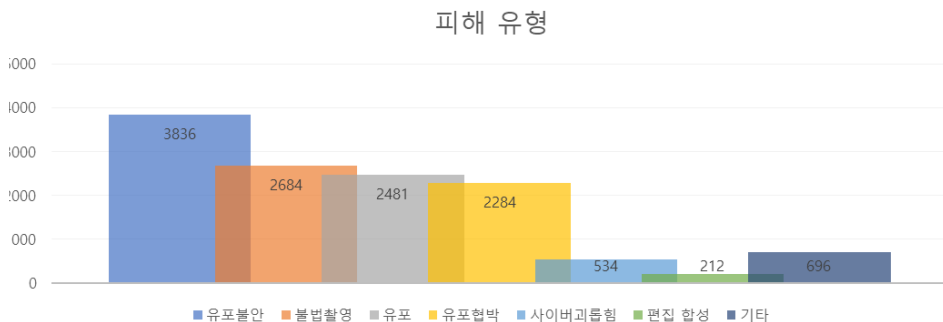
I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현황과 함의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개소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선제적 삭제지원, 상담을 통한 심리지원, 수사·의료·법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지원 프로세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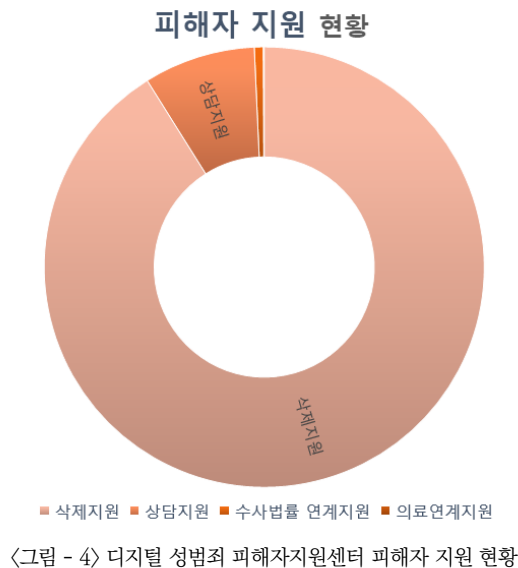
2022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727건으로 피해유형은 유포 불안 3,836건(30.1%), 불법촬영 2,684건(21.1%), 유포 2,481건(19.5%), 유포협박 2,284건(18.0%), 사이버괴롭힘 534건(4.2%), 편집·합성 212건(1.7%), 기타 696건(5.4%)으로 나타남.



〈그림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같은 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총 7,979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는데 전체 피해자 중 10대와 20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36%에 이른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6,007명으로 약 75%, 남성이 1,972명으로 약 25%임.

또한 총 23만 4천여건의 지원서비스를 진행했는데 구체적 내역으로는 삭제지원이 213,602건(91.1%), 상담지원 19,259건(8.2%), 수사·법률지원 연계 1,525건(0.6%), 의료지원 연계 174건(0.1%)으로 나타남.



〈그림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집계한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현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① 디지털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 비율이 모든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비추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¹⁰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양성의 젠더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의 보호와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②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양적, 질적 제고방안이 모색되어 한다는 점¹¹을 들 수 있음.

10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의 데이터를 통해 가공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발생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 32,898명 중 남성 피해자는 2,925명으로서 약 8.9%에 불과한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남성 피해자 비율은 25%에 이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범죄 피해자(성/연령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ED0610N_1 (2023. 12. 15. 최종방문).

11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 2023년 삭제를 지원한 피해촬영물은 총 24만3855건(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2022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 올해 삭제한 불법촬영물 '24만건'〉, 여성신문, 2023. 12. 31.

IV. 현행 피해자 지원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

- 제안에 같음하여

2017년 정부차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서에서는 앞다투어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음. 이에 따라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는 범죄로 포착할 수 없었던 디지털 기술 기반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장해 왔음.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수사뿐 아니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정식 가입 초청서를 받은 성과도 고무적임.¹²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의 연쇄적 피해 방지,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의 필요가 있음.

1. 법률적 조력 측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재판을 통한 가해자의 처벌은 법적 구제라는 차원보다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벌이라는 심리적 위안의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결과가 피해자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¹³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우리나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따라서 통상의 피해자는 주로

12 박선정, 〈유럽평의회, '디지털 범죄 국제 공조 협약' 한국 가입 만장일치 찬성〉, 법률신문, 2023. 1. 6.

13 박찬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피해지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이화젠더》 13(3), 2021, 48쪽.

증인의 지위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¹⁴ 가해자의 처벌 여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범죄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길 원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함. 특히 자신이 겪은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책감, 수치심 등의 심정으로 고통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제한적인 기회조차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수사과 재판 절차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전통적인 형사소송 구조에 따르면, 형사공판의 당사자는 검사로 대표되는 국가와 피고인이고 여기에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며,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법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증거가 사람과 같은 인적 증거일 경우에는 반대신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탄핵할 수 있음.

디지털 성폭력 범죄 중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의 범죄는 이를 목격한 제3의 증인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일이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¹⁵

그러나 피해자 변호사가 진술할 수 있는 의견은 범죄사실의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으로서(「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가 예정한 (모든) 피해자 진술권의 내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따라서 예를 들어 범죄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항(촬영의 동의 유무, 협박 유무 등)에 관한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신청권, 증인신문권, 피고인 신문권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진술내용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14 증인이 아닌 지위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인정되고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여전히 피해자가 사건의 주된 당사자의 지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조균석, 〈일본 피해자참가제도 시행 7년의 운영 성과와 그 시사점〉, 《일감법학》 38, 2017, 170쪽.

15 남궁평,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자의 참가범위에 관한 연구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논문, 2016, 28쪽.

한편, 일본은 2007년도에 피해자 참가제도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소송참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였음. 일본의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증인신문권, 피고인에 대한 질문권, 변론권 등이 인정되어 범죄 피해자를 소송 당사자의 지위로 격상시킨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¹⁶

독일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가 제도적으로 발전한 국가로서 주거침입, 모욕, 상해 등 경미 범죄의 피해자에게 독자적인 형사소추권을 인정하며(Privatklage),¹⁷ 피해자가 공소참여인으로 검사와 함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참가제도(Nebenklage)¹⁸를 두고 있음. 독일과 달리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형사소송법체계 하에서는 특별히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에게만 사건의 대등한 당사자에 준할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범죄 피해자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음. 그러나 우선적 과제로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최소한 증인의 지위에서라도 충분한 발언과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의 상가, 가해자와의 대면 등을 꺼려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반면, 본인의 피해 감정과 피해 사실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¹⁹ 따라서 형사절차상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바로 이 점에 집중하여,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피해자 변호사의 진술권이 현재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전담변호사와 비전담변호사의 두 형태로 운영되는데, 2022년 기준 전체 피해자 국선변호사 635명 중 국선전담변호사는 35명에 불과하고 비전담변호사가 600명으로서 대부분의 피해자 변호를 비전담국선변호사가 담당하였음.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는데, 비전담변호사의 국선변호에 대한 보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의 절반 수준으로 과중한 업무에 비하여 보수 수준이 낮고 이

16 임보미,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조력인의 개념과 역할〉, 《성신법학》 15, 2015, 43쪽.

17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오직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인이 소추할 수 있는 경우는 전무하다.

18 공소참여인으로서의 피해자에게는 독자적인 증거제출권 및 독립적인 상소권한까지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당사자와 같은 지위를 보장한다.

19 남궁평, 앞의 논문, 27쪽.

는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어려움.²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의 지급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단계적 확충이 고려되어야 함.

2. 피해자 지원 기구의 운영과 권한 측면

지난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그 기술에 편승하여 분화·발전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의 공백 사이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었음. 이러한 반복적 경험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가늠해 볼 때 향후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또 다른 양상과 유형으로 계속해서 진화·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대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와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에 커다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포 여부의 조속한 확인, 유포된 이후의 상황이라면 조속한 삭제, 재유포 가능성 제거 등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원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활동가에 대한 실증적 조사에서도 피해자와 활동가 모두 유포피해를 차단하고 재유포를 방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¹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원업무에 할애하고 있는데,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직접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니터링 후에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촬영물 등이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플랫폼이 불법사이트인 경우에는 삭제 요청의 수용률이 낮을뿐 아니라 삭제를 요청할 창구조차 없는 곳도 많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단 요청을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 신속심의를 통하여 삭제나 접속차단과 같은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차단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에 관련 기관과 권한이 분산화되어 있어 조속하고 강제적인 삭

20 신귀혜, <[피해자 국선변호인] ① 1심 기본 보수 20만원, 피고인 국선 '절반'...양질 법률지원 '글썸'>, 뉴시스, 2023. 1. 4.

21 박찬미, 앞의 글, 51, 53쪽.

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삭제에 관한 집권적 기관으로서 모니터링 - 유포 확인 - 삭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최단기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때 온라인 사업자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다른 법익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확한 삭제 기준의 정립, 온라인 사업자의 이의 신청권 보장 등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관한 비교법적 모델로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2021」(Online Safety Act 2021)을 들 수 있는 바, 이 법의 전신인 「온라인안전강화법 2015」(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에 근거하여 설립된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은 호주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총괄적 책임기관으로서 이 기관은 비동의의 개인 이미지를 포함한 온라인 폭력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요청서나 차단통지서를 교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적 제재(civil penalty)를 직접 부과하거나 도메인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며 이조차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호주 연방법원에 온라인서비스 공급 중단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영국 역시 2022년 3월 통신규제기관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는 권한을 인정한 「온라인안전법안」이 발의되어 2023년 10월 26일 국왕의 승인(Royal assent)을 거쳐 법률로 발효되었음. 온라인상의 유해한 콘텐츠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기관의 선정과 권한 강화를 지향하는 입법례는 향후 우리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시사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삭제지원뿐 아니라 수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서비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상담소등 여타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연계지원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²² 2023년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체 인력은 39명에 불과하고 그중 15명은 기간제 직원임. 업무의 과중함과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력구성은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업무의 증대뿐 아니라 업무의 숙련도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원활동가의 교체에 부담을

22 김한균, <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화젠더법학》 15(2), 2023, 213쪽.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원 확충과 더불어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화가 요청됨.²³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거듭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특히 2024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 성범죄,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개편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감축하였음. 이 과정에서 다수의 개별 상담 기관들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 줄어든 예산과 인력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역별로 개별 상담소에서 운영해오던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이 정부에 의해 새롭게 선정된 통합상담소로 이관될 예정으로 기존 상담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단절 등이 우려됨.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로 지정된 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의료와 법률지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센터가 진행하는 삭제지원으로의 연계,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여 왔음. 다른 폭력 범죄보다 대응의 신속성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응해야 하는 통합상담소에서 기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특화한 상담과 치료,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의 적용과 실천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

우리의 생활영역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그 피해의 양상과 규모가 대면 성폭력 범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피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유포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특수한 지원 영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전문적 인력 양성과 충원 외에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자동 검색, 자동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국가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방지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의 소모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촉구함.

23 여가부는 기간제 직원 전원에 대해 정규직을 요청하고 정규 인력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오세진,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전원 정규직화 추진〉, 한겨레신문, 2023. 5. 3.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태경,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와 접촉성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 비교〉, 《상담 심리교육복지》 8(6), 2021, 23~40쪽.
- 김한균, 〈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화젠더법학》 15(2), 2023, 193~221쪽.
- 박찬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피해지원자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이화젠더》 13(3), 2021, 31~63쪽.
- 성현정,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과 과제〉, 《피해자학연구》 31(2), 2023, 265~292쪽.
- 소병도, 〈범죄피해자의 헌법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통한 보장〉, 《홍익법학》 17(2), 2016, 307~332쪽.
- 임보미,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조력인의 개념과 역할〉, 《성신법학》 15, 2015, 33~61쪽.
- 조균석, 〈일본 피해자참가제도 시행 7년의 운영 성과와 그 시사점〉, 《일감법학》 38, 2017, 169~194쪽.

2. 기타 자료

- 남궁평,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자의 참가범위에 관한 연구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논문, 2016.
- 박상혁, 〈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 올해 삭제한 불법촬영물 '24만건'〉, 여성신문, 2023. 12. 31.
- 박선정, 〈유럽평의회, '디지털 범죄 국제 공조 협약' 한국 가입 만장일치 찬성〉, 법률신문, 2023. 1. 6.
- 신귀혜, 〈[피해자 국선변호인] ① 1심 기본 보수 20만원, 피고인 국선 '절반'...양질 법률지원 '글쎄'〉, 뉴시스, 2023. 1. 4.
- 오세진,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전원 정규직화 추진〉, 한겨레신문, 2023. 5. 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범죄 피해자(성/연령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ED0610N_1 (2023. 12. 15. 최종방문).